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현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인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전화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만나우uri go PSPD / 전자우편: 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김상조, 담당: 홍일표: 723-5056)
 제 목 재계의 지주회사 연결납세 허용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1999. 7. 8. (총 4 쪽)

성명서

재계의 연결납세 허용과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요구는 재벌에 대한 특혜요구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부에 질의서 발송—

1. 한-미 합작 가스회사인 SK-ENRON사는 지난 4일 '지주회사의 2중 과세 문제가 해결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주회사에 대한 2중 과세 문제의 해결, 즉 연결납세 허용은 비단 SK-ENRON사 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결납세 허용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2. 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 허용은 사실상 단일한 경제주체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단일한 경제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 허용 조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우리 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는데, 다만 ①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미만,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자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는 30% 이상)의 요건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너무 느슨하여 재벌의 확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설립 요건을 강화하거나 또는 재벌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지주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4. 반면,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의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연결납세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특히 자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지분을 30% 이상이라는 현행 설립 요건하에서는 절대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단일한 경제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자회사 지분을 50% 또는 7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주주의 이익과 지주회사의 이익은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따라서 현재의 느슨한 지주회사 설립 요건하에서는 연결납세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재계가 요구하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의 완화도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벌의 이러한 요구가 재벌에 대한 특혜요구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 ▣별첨자료▣
1. 연결납세제도 허용기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서
 2. 연결납세제도 허용기준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